

2014. 8. 30.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 공채(남·여).101경비단.전의경 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경찰학개론(2014년 전정판, 김재규 저)
 ▶ 객 - 객관식 경찰학개론(2014년 전정판, 김재규 저)
 ▶ 토탈 - TOTAL기출문제 경찰학개론(2014년 개정판2쇄, 김재규 엮음)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36·37, 객 p46 문 32, 토탈 p529 문2)

- ①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1. 정답 ③

해설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대상이 된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71·74·77·81)

-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측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 ④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2. 정답 ④

해설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1891)'를 모방한 것으로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측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 ③ 미군정 시대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 ④ 옳은 설명이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18·119, 객 p158 문23, 토탈 p725 문7)

- ①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정답 ①

해설 ①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② 경찰법 제9조 제2항
- ③ 동법 제7조 제3항
- ④ 동법 제6조 제4항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137·141, 객 p184 문15, 토탈 p519 문2)

-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정답 ③

해설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③ 동법 제6조 제2항
-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5.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기 p264, 객 p339 문19, 토탈 p626 문25)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 ①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 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 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5. 정답 ③

해설 경찰장구 - ㉠ 포승, ㉡ 전자충격기, ㉢ 경찰봉

무기 - ㉣ 산탄총

분사기·최루탄 등 - ㉤ 가스발사총

기타장비 - ㉦ 살수차, ㉧ 석궁, ㉨ 가스차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종류(제2조)]

경찰장구	수갑, 포승(捕繩),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무 기	권총, 소총, 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도검
분사기· 최루탄 등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기타장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차단장비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69, 객 p225 문111, 토탈 p70 문26)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6. 정답 ②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1항).
 즉,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③ 동법 제10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1항

7.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204·206·211)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4 -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통합방위사태의 건의·선포(통합방위법 제12조)]

사 유	건의권자	선포권자
①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시·도지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410·412, 객 p468 문92, 토탈 p734 문25)

-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2. 정답 ①

해설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② 동법 제4조 제1항
- ③ 동법 제2조 제3호
- ④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13.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 p460, 객 p520 문102, 토탈 p190 문48)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① 9년
- ② 9년 6개월
- ③ 10년
- ④ 10년 6개월

13. 정답 ①

해설 ㉠ 2년, ㉡ 5년, ㉢ 2년, ㉤ 0년(바로 응시 가능) 모두 합하면 9년이다.

※ ㉔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5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4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3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2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②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취소된 경우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취소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경우 ⑥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경우 ⑦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 ⑧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⑨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1년간 제한	① 앞에서 규정된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정지처분기간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미필자, 제2종에 응시하는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438, 객 p501 문60, 토탈 p590 문30)

-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②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③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④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

태를 말한다.

14. 정답 ②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②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③ 동법 제2조 제7호

④ 동법 제2조 제25호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 p541, 객 p597 문 34, 토탈 p227 문27)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 | | | | |
|----------|-------|--------|-------|
| ① ㉠ PNIO | ㉡ SRI | ㉢ EEI | ㉤ OIR |
| ② ㉠ EEI | ㉡ SRI | ㉢ PNIO | ㉤ OIR |
| ③ ㉠ PNIO | ㉡ OIR | ㉢ EEI | ㉤ SRI |
| ④ ㉠ EEI | ㉡ OIR | ㉢ PNIO | ㉤ SRI |

15. 정답 ②

해설 ㉠ EEI, ㉡ SRI, ㉢ PNIO, ㉤ OIR이다.

[정보의 요구방법]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① 국가 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 정보목표의 우선순위 ②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 →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첩보기본요소(EEI)	① 정부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포괄적 정보 ②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③ EEI의 개념은 SRI의 개념과는 상대적인 개념임
특별정보요구(SRI)	①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상황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요구 ② 즉흥적인 정보요구방법
기타정보요구(OIR)	①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 ② OIR로 책정되는 정보는 PNIO에 우선하여 작성함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561·562·564, 객 p617 문83, 토탈 p490 문16)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6. 정답 ①

해설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② 동법률 제9조 제1항
- ③ 동법률 제7조 제1항
- ④ 동법률 제12조 제2항

17.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638·639·642, 객 p682 문91, 토탈 p367 문17)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17. 정답 ③

해설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동법 제5조).
- ③ 동법 제2조 제1호
-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검사”가 한다.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18. 다음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634, 객 p678 문82, 토탈 p280 문52)

-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정답 ②

해설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직권남용 문고.날조죄(제12조 제2항)이다.

[국가보안법 중 행위주체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신분법)]

- ① 목적수행죄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제4조)
- ② 자진지원죄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제5조 제1항)
- ③ 허위사실날조·유포죄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제7조 제4항)
- ④ 특수직무유기죄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11조)
- ⑤ 제12조 제2항(직권남용)의 무고·날조죄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 p692, 객 p732 문 92, 토탈 p714 문9·p739 문38)

-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정답 ③

해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집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집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범죄인인도법 제9조).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

